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6948(본소), 2022나2046955(반소),
2022나2046962(반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6948(본소), 2022나2046955(반소),
2022나204696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5588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C

피고, 항소인2. D 주식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3. F 주식회사(변정 전: G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3. 3. 2.[피고 D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F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3. 3. 23.[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판결 선고2023. 5. 2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55886(본소),

2022가합534480(반소), 2022가합540713(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의 반소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가 별지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B에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B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C, F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처음 표기한 다음부터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 B"를 "B"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4, 15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17행의 "(2020가합546748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6748, 위 판결은 2020.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부터 6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별지 2]를 삭제한다.
"마. B는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일부씩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그중 I 관련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는 다음 내용과 같은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1) B는 2020. 5. 4. 원고에게 I에 대한 일부 물품대금 채권(307,633,780원)을 양도하였고, 2020. 5. 6. I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0. 5. 7. I에 도달하였다. 이후 I는 202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 제1181호로 물품대금 채권 359,216,331원을

혼합공탁하였다.

2) 피고 F이 2020. 11. 18.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7. 6.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 위 채권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는 B에 위 공탁금 중 207,633,78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760), 위 판결은 202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42032031).

3) 원고가 2020. 11. 25. 피고들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 D이 2021. 2. 26.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7. 6. (1) 위 공탁금 중 307,633,7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위 채권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는 B에 위 공탁금 중 307,633,78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0369(본소) 등], 위 판결은 202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048(본소) 등]."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5. 4. B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채무자인 H이 2020. 5. 7.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채권양도 통지일 후에서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명령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인 B의 채권양수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20. 5. 7.

채무자인 H에 도달하였고, 채무자 B의 채권자들인 피고 C, F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
정본은 2020. 5. 27. 이후에서야 제3채무자 H에 도달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피고 C, F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F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C, F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툼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 C, F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215875 판결 참조).1)

따라서 피고 C,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인 B의 채권양수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20. 5.
7. 채무자인 H에 도달하였고, 채무자 B의 채권자인 피고 D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 정본은
2020. 5. 29. 이후에서야 제3채무자인 H에 도달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2)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툼다.

살피건대,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21. 4. 13.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3. 1. 12.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는 B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합50538), 위 판결은 2023. 2.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쪽 5행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하고, 8쪽 6행의 "가."항을 "나."항으로, 9쪽 9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13쪽 6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17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14쪽
17행의 "마."항을 "바."항으로, 15쪽 10행의 "바."항을 "사."항으로 각 고친다.

"가. 피고 C, F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C, F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D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김영현

판사조인

별지

1) 피고 C, F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원상회복 절차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